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 위기를 넘어, 혁신·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 -

2021. 2. 3.

고용노동부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5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7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23

【붙임 1】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붙임 2】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주요 사업 예산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그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존중 일터 조성'**에 **역량집중**

○ 특히, 지난해는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확충 집중 추진**

○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등 **노동존중 일터**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병행

☞ **신속한 고용위기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탄탄한 고용안전망**과 위기 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금년도 핵심과제**

1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 정부 출범 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일자리위원회**('17.5월 설치) 중심 **범정부 일자리정책 수립·추진**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 공공부분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

- **지역주도** 일자리창출(지역고용 거버넌스 운영 등)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등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창출 역량 강화**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20.1월.~),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18년~) 등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및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지속 추진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일·생활 균형 확산**

▸ **(청년)**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청년 3대 핵심사업 추진, 청년-중소기업 간 매칭 강화 등

▸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월), 육아휴직('19.1월) 및 가족돌봄 지원강화('20.1월) 등

▸ **(고령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인생 3모작(주된 일자리–재취업–퇴직 후 사회참여)' 지원

2 코로나 위기 대응

□ **4차례 추경**을 포함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에 총력

* 4차례 추경을 통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에 **총 14조원 투입**

○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현장노사 밀착 지원, 기업지원 시 **고용유지 조건** 부과 등 노사의 **고용유지노력 최대한 지원**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2조 3천억원 지급(`19년 대비 34배로 증가)

○ **(생계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안정 지원***(267만명, 3조원) 및 **구직급여 확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만명),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18.5만명),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8만명),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29만명)

○ **(일자리기회 확대)** 약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회복력** 유지

☞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불확실성**은 **지속,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비경활 유입** 등 위기 후 **회복력 저하** 우려

3 고용안전망 확대(한국판 뉴딜)

□ **(고용보험 지원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 →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연장(90~240 → 120~270일)





□ **(전국민 고용안전망)**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모든 일하는 국민 대상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 **(1차 고용안전망)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12.10),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국회 통과(12.9, '21.7.1 시행) 등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차 고용안전망)**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6월) 및 인프라 구축 → '21.1.1. 시행

○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발표**('20.12월)

4 노동존중 일터 조성

□ **(노동시간 단축)** 50~299인 **계도기간 부여 및 밀착 지원 등 주52시간제 단계적 적용과** 현장안착 노력, 탄력근로 개선 등 추가 **보완입법*** **마무리**

* (탄력근로) 3~6개월 유형 신설 등, (선택근로) R&D업무 정산기간 확대 등(`20.12월 개정)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안전)**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22년)을 목표로 **예방책임 확대** 제도개선[1], **추락,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 관리·지원** 강화[2] 등을 집중 추진

1) 원청 책임확대, 특고 등 적용대상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19.1월, 공포 '20.1월 시행)
2)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수립·추진(`20.6월)

☞ '**16년 1천명대**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20년 8백명대**로 감소,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관리·감독**의 한계, **중대재해** 등 영향으로 '**20년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특고 등의 **산재보험 적용범위**(9→14개 직종, ‘20.7월) **확대** 및 가입 촉진

○ 코로나19 대응 ❶**사업장 내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지침**(‘20년, 총8판) 배포, **지도·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❷**택배종사자** 과로방지 위한 **기획감독**(‘20.11월)

□ **(취약분야 노동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19.7월), 취약분야 **근로감독 강화**[1] 및 **체불 청산지원 확대** 등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2]

1) 택배·경비원 등 선제감독, 신고 다수사업장 감독 등

2) 체불발생액(천억원): (’19) 17.2 → (’20) 15.8, 체불청산근로자 비중(%): (’19) 85.9 → (’20) 93.8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와 코로나19 등 위기 시 **필수노동자**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추진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11.12.)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12.14.)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12.21.) 등

□ **(정규직고용 관행 정착)**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공무직위원회**(‘20.3월 설치)를 통한 처우개선 및 합리적 인사운영 지원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9만9천명 전환(’17.7~’20.12월)

○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20.11월), 차별시정 **감독·자율개선** 강화

* (기간제)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 채용 원칙 등, (사내하도급) 건강·안전보호 책임 강화 등

□ **(노사관계 안정) ILO 3법 개정**(‘20.12월) 등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기틀 마련(**경사노위 출범**, ‘18.11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1](‘20.7월) 등 협력·연대 확산,[2] **경사노委 의제·업종별** 위원회(‘20년 총 13개) 부문별 합의 도출

1) (주요내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충 등

2) 지역(71회), 업종(5회), 기업(88개소) 차원에서의 상생협력 선언

☞ **노동존중 일터**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관행 개선 노력,**
새로운 취약분야 권익 보호,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일부 **불안요인 상존**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경제)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나, 백신 등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내수 회복 등을 제약**할 가능성

* '20.12월 OECD 경제전망(%, '20→'21년): <세계> △4.2→4.2, <한국> △1.1→2.8

□ **(고용)**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회복속도·시기** 등에 **불확실성은 큰 상황**

○ 코로나19 확산세·상용직 채용연기 등을 고려 시,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 어려움 지속** 예상

* 비경활 유입, 구직포기자 증가 시 이력(履歷)효과 등으로 경기회복 후 일자리 반등 지연 가능

○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부문간 노동이동** 및 **다양한 고용형태** 일자리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중심 **일하는 방식 변화** 등도 가속화 예상

□ **(노사관계)** ▲전반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 ▲후반기는 **개정 노조법 안착, 정치상황** 등이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 택배기사 등 **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망 확대·권익보호**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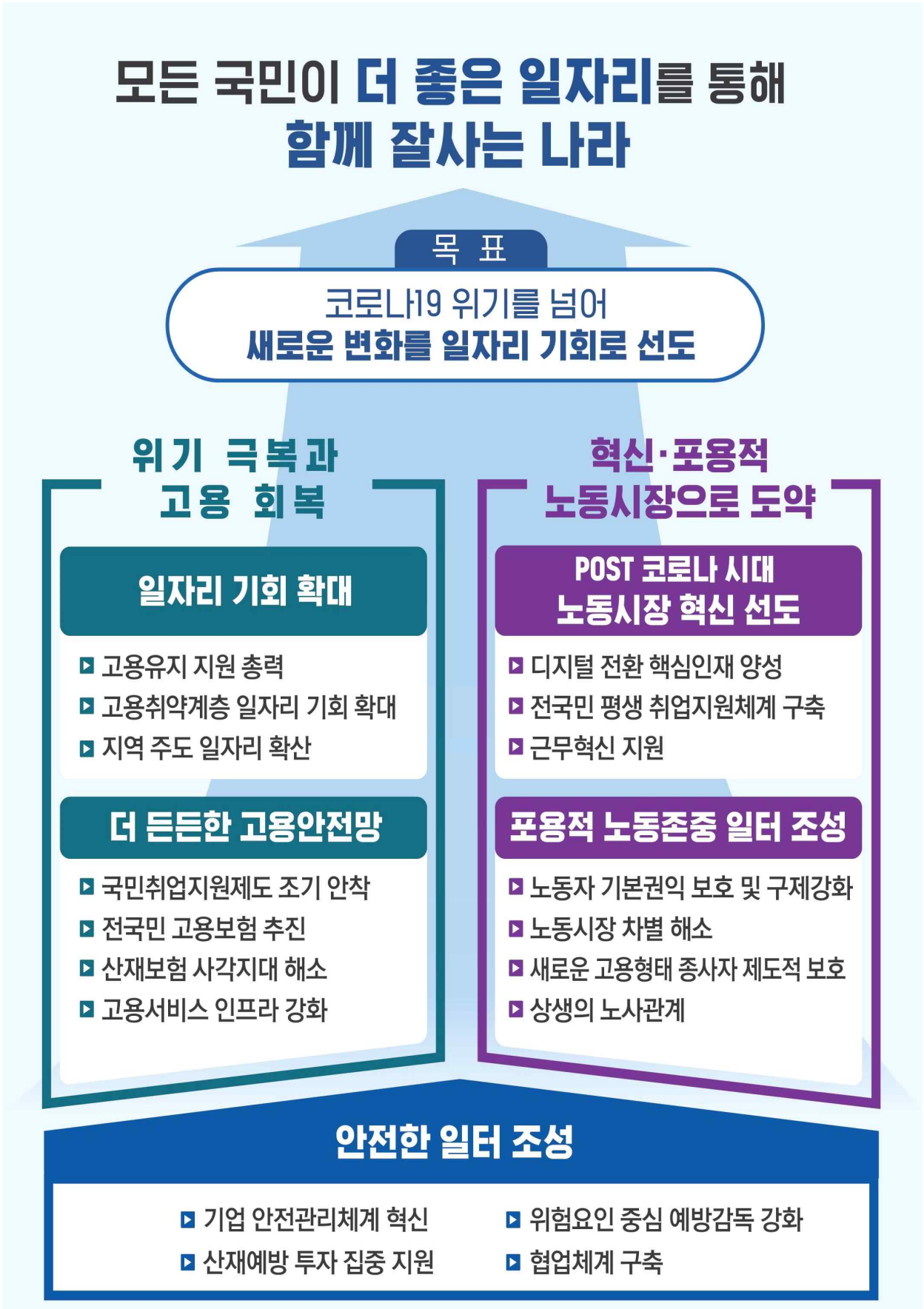
○ 현장 단위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간 고통분담 기조** 지속이 예상되나, 일부 취약업종 중심 **'구조조정' 문제** 등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산업안전) 산재사고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기업·경영자 및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 '21년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회복**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등 **핵심과제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 **위기 극복**과 **혁신·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POST 코로나 시대 변화를 **일자리 확대와 격차 완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
목 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선도
위기 극복과
고용 회복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유지 지원 총력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지역 주도 일자리 확산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혁신·포용적
노동시장으로 도약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디지털 전환 핵심인재 양성
전국민 평생 취업지원체계 구축
근무혁신 지원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노동자 기본권익 보호 및 구제강화
노동시장 차별 해소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제도적 보호
상생의 노사관계
안전한 일터 조성
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
산재예방 투자 집중 지원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강화
협업체계 구축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과제 1.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1/4분기 고용유지에 역량 집중,
고용충격이 큰 청년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비경활 유입 방지

1 고용유지 지원에 총력

□ **(전방위적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4분기 40만명**(50%) 집중지원('21년 1.4조원)

○ **「고용안정 현장지원 TF」**(전국 60개 고용센터)를 통해 **중점관리사업장**(700여개)의 **고용유지 애로사항**을 발굴 → **컨설팅** 및 **지원제도** 연계

○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노사합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고용안정 협약지원금」***(2.9만명)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고용유지 애로 지원**

* 노사 협약 통해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50%, 최대 6개월) 지원

□ **(취약업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21.3월말)[1]에 대한 고용유지 및 훈련 등 **1/4분기 집중 지원**[2] 및 **연장 여부 검토**

1) 여행업,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일), ▲업종별(전시·여행 등) 찾아가는 훈련 컨설팅 등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수준 상향**(67→90%, 20.4만명)

○ 旣 연장된(~'21.12월) **고용위기지역**(7개) **성과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검토

□ **(사각지대)** 고용유지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 확대**('21.1.1. 시행)

※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29.) 신속 집행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3,750억원 <旣수혜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9만명, 460억원 <1인당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 8만명, 400억원 <1인당 50만원>

2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사업) 30.5조원** 규모(전년대비 19.7% 증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1/4분기 38%, 상반기 67%**를 **신속 집행**

○ 특히, 금년 **104.2만명**의 고용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50만명(48%), 1/4분기** 중 **83만명**(80%) 이상 **조기 채용** 노력

□ **(맞춤형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여성** 등의 **비경활 유입 및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구직포기자**(NEET) 등의 **비경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추진



☞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21.1/4)

○ **(여성) 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

- **(통합 고용서비스) 고용센터**(실업급여, 훈련 등)**-새일센터**(알선 등)와 **연계 강화, 훈련 후 재취업**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 **(맞춤형 훈련) 여성 특화 훈련·채용지원 확대**[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재택훈련 강화** 및 **훈련·육아 연계서비스 모델 확산**[2]('21.3/4)

1) ICT·보건 등 여성친화적 분야 확대, K-move 스쿨 여성특화과정 우대(간호, 호텔업 등)

2)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폴리텍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육아 지원방안 마련
↳ **(서울시)** 자녀 동반 사무실 등 운영(스페이스살림), **(경기도)** 여성IT 직업훈련 교육 공간 내 보육시설 운영

☞ 관계부처 합동 「여성 특화 재취업지원 대책」 마련('21.1/4)

○ **(고령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1](’20.1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2](’21.下)

1) (’20) 경영 전문가, 각종 정비조작원 등 213개 직무 → (’21) **디지털그린분야 29개 직무 추가 선정**
2) 주요내용(안): 점진적 퇴직지원, 주된일자리 고용연장, 재취업지원 활성화, 생애 경력설계 확대,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등

○ **(장애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1], 출퇴근 비용 지원 신설[2],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규모 확대**(75→90개소)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1) (’21년) 3.4% → (’22~’23년) 3.6% → (’24년~) 3.8% (「장애인고용법」 개정추진)
2)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 지원(6.3천명) 등

○ **(사회적기업) 판로·금융** 등 **간접지원 내실화**[1], **취·창업 기회 확대**[2] 지원

1) **(판로)** 온라인·비대면 지원, 우선구매 활성화 등 판로개척 통합지원 방안 마련(’21.上)
(금융) 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사회적금융 공급 지속 확대(’21.上)
2) 신규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21년 7,775명), 예비창업자 자금 지원(’21년 850팀)

□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지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해 **전직지원,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 패키지 지원(現 5→8개)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포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480억원지원

- **’20년 旣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업계획 재설계** 지원(~’21.2월)

▸ (**인천**) 뿌리산업 공정 자동화·기술혁신 컨설팅 및 맞춤형 입직 지원 등
▸ (**경남**) 미래자동차·방위·항공산업 기술혁신 지원, 의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 (**경북**) 스마트모빌리티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충북**) ICT 융합·신에너지·신교통 산학연 연계, 유기농·식품 사업화 지원 등
▸ (**전북**) 농식품산업 패키지 지원, 미래형 친환경특장차·수소전기차 집적화 지원 등
▸ (**추가 선정**) 3개 광역-기초 지자체 컨소시엄 추가 선정 예정(’21.2월)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하여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컨설팅+패키지지원)

* (’20) 광주·밀양·횡성 3개 지역 선정(총 7개 노사민정 협약체결 지역 中)
→ (’21) 추가 선정(2개소+α), 컨설팅 지원(10개소 내외)

과제 2.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로드맵을 토대로 한국판 뉴딜의 삼각축인 '모든 일하는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혁신으로 이를 뒷받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 **(조기안착)**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59만명** 대상 **취업지원·소득지원** 시행 → 적극적 홍보·우수사례 발굴 등 **집중 관리 실시**

* 누적 신청자 수('20.12.28.~'21.1.31.) : 197,049명(청년층 60.9%)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분기**에 **조기 집중지원**(1분기 지원목표 18.9만명: Ⅰ유형 15만명, Ⅱ유형 3.9만명)

○ **1:1 밀착·심층상담**을 통해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경험**이 **필요**한 구직자 등에 **「일경험프로그램」 신설**('21, 2.9만명)」

▸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NGO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구직의욕 고취**

▸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취업연계**

○ **일자리센터**(지자체) **121개소**(1만명) 및 **새일센터**(여가부) **110개소**(1.9만명)와 **연계·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0.12.30., 업무협약 체결)

□ **(제도보완)** **운영성과 평가**('21.上)에 착수,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방안*을 반영한 '(가칭)**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21.下)

* (예시) 소득요건 완화(중위소득 50 → 60% 이하), 구직촉진수당(現 50만원) 인상 등 검토

2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단계적 적용 확대) 예술인·특고**(14개직종 중심) **도입초기 가입확대** 및 **안착**을 **추진**하면서,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도 준비**



○ **(예술인, '20.12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정착 지원, 두루누리 사업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22억원) 등을 통한 **가입확대**(고용부-문체부 협업)

* 예술인 계약체결 사업장, 예술인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기간**('20.12.10~'21.3.10) **운영**, 주요내용 안내(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등) 강화

○ **(특고, '21.7월~) 우선적용 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금년 7월** 차질없는 **적용 준비** 및 **초기 가입 확대** 노력

▸ **(하위법령 개정)** 노사 및 전문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용직종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21.6월)

* 주요내용: 적용직종, 보험료율·분담비율, 보험료 상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소득감소 기준 등

▸ **(인프라)** 특고 적용 **시행지침 마련** 및 **인력·전산시스템 확충, 특고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21.上)

▸ **(부담완화)** 두루누리사업으로 저소득 특고·영세사업주 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 **(플랫폼·자영업자) 실태파악**, 플랫폼 신고의무 부과 등 **플랫폼 직종 적용**('22년~)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1/4분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 **(임시·일용 등 가입 촉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시·일용 등 근로자 적용누락 확인** 및 **직권가입 확대**

*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인·직권가입

□ **(재정건전성 확보)**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21.上)

* 지출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 우선 추진,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3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적용 확대)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가능한 직종 지속 발굴*** 등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노력 지속

* ('20.7) 9→14개, ('2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 마트·물류 유통기사, 간병인 등 검토

□ **(가입 확대)**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21.7.1. 시행)[1] 및 **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2]('21.上 입법안 발의) 등 추진

1)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

2)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개선) '다른 사람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전반 확대

○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한시 경감***('21.7.1. 시행), **특고 입직 신고 누락 사업장**에 대한 **특별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22년)

* 경감대상 및 경감수준 등 하위법령 정비('21.上) 후 시행

4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 **(공공) 디지털·비대면** 기반 **"더 가까워진" 혁신적 고용센터** 구축

○ **(디지털 기반 고도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원스톱(one-stop) 취업상담 및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21.8월)

* (현행) 日단위 일자리 추천 → (개선) 실시간 추천 일자리 + 훈련 및 자격사항 추천

○ **(유형별 맞춤서비스) 구인기업·구직자**를 **특성**과 **채용여건** 등에 따라 **유형화**(프로파일링)하고, **선별·밀착 지원**

* (예시: 구인기업) 기업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분류 및 맞춤형 채용지원 연계, 특히 고용여건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제공

○ **(접근성 개선)** 고용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용센터 등 확대**(101→173개소), 고용센터 **상담인력도 지속 확대**

* 중형센터(30개소), 출장소(40개소) 설치('20.下), 성동광진, 강북성북센터 설치('21.6월)

□ **(민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재구축**(사전컨설팅 - 역량심사(등급부여) - 우수기관 인증)하여 **위탁기관 전체** 대상 **품질관리** 강화

* 신규 위탁기관 발굴 위한 사전 컨설팅 확대, NCS 기반의 종사자 역량 교육 등 병행

과제 3.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른 선도 인력양성 및 전국민 평생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제도 안착 추진

1 디지털 전환 선도 핵심인재 양성

□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 디지털·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범정부 디지털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 관리(트랙구축) 및 효율화

* 관계부처 추천 산업계 등 전문가 TF → 21개 디지털·그린 분야 인력수요전망

< 분야·수준별 트랙 예시 >

구 분	초 급	중 급	고급·전문
인공지능	초·중·고 (교육부) 일반 (고용부)	K-digital training (고용부)	인공지능핵심 인재양성(과기정통부)

□ **(핵심 실무인재 양성)**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 확대('21년 1.7만명, 1,390억원)

* K-digital 훈련 양성 규모(만명): ('21) 1.7 → ('22) 4 → ('25) 18(누적)

▲ 멋쟁이 사자처럼: 직장인 등 대상 정보기술 핵심과정 제공
▲ 네이버 커넥트: 온오프라인 교육 무료제공, 네이버 현업종사자 1:1 지도 등

○ 청년구직자에 신기술 훈련비용 추가 50만원 지원(4만명, K-Digital Credit)

* 우수대학, 혁신훈련기관 중심으로 20여개 공급기관 선정 예정('21.3월)

- 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초지식 제공을 위한 원격 훈련 콘텐츠 개발·지원*('21년 27.6만명, 52억원)

* AI·빅데이터 등 훈련과정 개발 → 사업주 자체·위탁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으로 공급

□ **(공공훈련 인프라 강화)** 민간 혁신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와의 연계, 신기술 중심 학과 개편 등을 통해 폴리텍의 지역 디지털 훈련 허브化

* ▲ (Test bed) 폴리텍 내 하이테크 과정을 신설·개편하여 신기술 훈련 선도 역할 수행
▲ (개방·공유) 폴리텍 러닝팩토리를 지역 훈련기관과 공유 및 신기술 프로그램 연계·제공

2 전국민 평생 취업지원체계 구축

□ **(국민 평생능력개발 기반 강화)** 모든 국민이 **디지털·신기술** 및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생애에 걸쳐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21.1/4)

* (현행) 근로자 중심 「**직업능력개발법**」, 직무능력 향상 중심 「**국민내일배움카드**」
→ (개선) 모든 국민 대상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포괄·융합적 직무기초능력 추가 「**국민내일카드**」

○ **(인프라 확대) 전국민 평생 역량강화**를 위한 **허브 구축** 및 **접근성 제고**

▸ **(접근성 제고) HRD-Net**을 통해 **全 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확인**하고('21.4월~),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통합신청·관리**('22년~)하도록 **단계적 시스템 개편** 추진

▸ **(훈련플랫폼 제공)** 지역 內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디지털 훈련**을 **공유·개방**하는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 **5개소 신설**

▸ **(생애 경력관리)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 **도입방안 마련, 개인별 맞춤형 경력개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훈련부담 완화)** 청·장년층,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을 확대**('21년 한시, 최대 30만원)하여 자율적 전직 지원

* 특별지원업종 내일배움카드 훈련비(3→4백만원), 자부담률(최대 55→20%) 우대 중

□ **(중·장년 재취업 지원)** **대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안착** 지원[1], **중소기업**은 **중·고령자에 특화**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2]

1) 1,000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컨설팅(450개소) 및 프로그램 지원,
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31개소)를 생애경력설계 → 중·고령자 취·창업지원 중심 개편

□ **(업종·지역 특화지원)**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업종·지역단위 **전직지원 수요** 및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

○ **업종별 필요 역량**과 **전직수요**를 반영한 **훈련** 및 **취·창업지원 연계**('21.上~)

수요 조사	⇒	맞춤형 훈련 및 생계지원	⇒	취·창업 연계
인자委·협회·지방관서		고용부·훈련기관		고용부·지자체·협회

○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확대** 추진(21년, 경남도+α)

*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 지원(고용부), 지자체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50% 지원

○ 고용센터 중심 기관간 연계로 고용조정 우려 업종 종사자에 대해 전직지원 통합서비스(훈련, 경력설계, 창업 등 선택권 확대) 제공('21.1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 마련·추진('21.1/4)
→ 이를 토대로 산업 간 인력조정에 대비한 전직지원 등 법적기반 마련

3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지원

□ **(주52시간제 연착륙 지원)** 기업규모별 주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휴일 민간적용도 차질없이 추진('21.1월~)

○ 50~299인 기업은 자율개선지원[1], 근로감독 등을 통해 법 준수 지도, 5~49인 기업은 현장지원단[2]과 정착 지원금[3] 등 조기안착 유도

1)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사업 도입(1,000개소), 민간노무사·감독관이 현장지원
2)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희망 기업에 무료상담 지원('21년 4,400개소)
3)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원('21년 375개소)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30~299인) 현장 정착 적극 지원*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 시 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정책자금, 구인지원 등 우대

□ **(일-돌봄 양립지원)** 가족돌봄휴직(재난사유 추가), 임신중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 추진(~'21.上), 부부 공동육아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추진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부부 각 3개월 月 최대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등('22~)

□ **(비대면·유연 근무 확대)** 간접노무비(21천명), 인프라 구축비(최대 2천만원),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400개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도입·활용 촉진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정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속 지원

* ('20년) 300인 이상 → **('21년, 확대 시행) 30~299인** → ('22년) 全 사업장

과제 4.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취약분야·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기본권익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지속

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구제강화

□ (필수노동자)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입법[1]을 추진('21.上)하고, 과로방지·근무여건 개선, 생계지원 등 분야별 중점과제[2]를 차질없이 이행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 필수노동자 정의, 필수노동자 지원委 설립, 정부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2)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발표('20.12월)



□ (3대 취약분야)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한 예방 감독 및 제도적 보호 강화

○ (임금체불) 악의적 체불사업주를 전담하는 「강제수사 전담팀」 신설('21년 6개 권역별), 재직근로자 지연이자 적용* 등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21.上)

* (현행) 퇴직자에 한해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연 20%) 부과 → (개선) 재직자까지 확대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7→2개월 단축), 재직자 체당금 신설 등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강화('21.上)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신설, 고객 폭언 보호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21.上)

* 상담센터 확대운영(8→10개소),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강사 지원, '21년 사업 신설) 등을 통한 현장안착 지원 강화

○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지도·점검, 제도 안내 등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185만명, 1.3조원) 지속 지원

⇨ '21년 근로감독은 **취약해진 시장상황**을 감안, **"선택"과 "집중"** 추진

-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집중 감독**

* (정기감독)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先 자율개선 → 後 현장점검 방식
(수시감독)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 체불 근절에 주력 (특별감독) 동종·유사업종 재발방지 등 파급력 제고 (노무관리지도)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등 **주거환경 개선**[1], **산재보험**[2]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3] 등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컨테이너 등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21.1월), 농·어업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2) **5인 미만 농·어업 산재보험**(또는 농·어업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외고법 시행령 개정, '21.上)
3) (현행) 개인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지역 가입 가능** →
(개선) 직장가입 의무화 또는 입국 후 지역가입 즉시 적용 등 **보완방안 마련**('21.下)

○ 산안법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허가 제한**('21.下), 최초 고용허가 시 **사업주 교육 의무화**('21.上 외고법 개정) 등 **사업주 책임 제고**

2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차별 해소

□ **(비정규직)** 공공 정규직 전환 **미결정 기관별 맞춤형 지원**(컨설팅, 간담회 등),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확산**(864개 全 기관)

○ **「공무직위원회」**('20.3월~) 종합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임금체계** 및 **인사·노무 관리** 제도개선 추진('21.下)

○ 민간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등 **차별시정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간제법·파견법),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및 **차별해소 지원 강화***

*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단 컨설팅」 사업 신설

□ **(공정 채용)** 공공 **「공정채용 합동 컨설팅단」**[1]을 **구성·운영**('21.上~)하고, **중·소규모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채용단계별 집중 컨설팅**[2] 실시

1) ▲(참여) 기재부·고용부·권익위·인사처·인력공단 등 ▲(대상)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내용) 부처별 주요추진 정책, 지침 등 안내 및 인사 관련 궁금증·애로사항 해소 등
2) 소규모 공공기관 밀착 컨설팅, 면접관 Pool제 운영, 취업준비생과 공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온라인 매칭을 통한 1:1 컨설팅 등

○ 민간 중소기업 중심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MOU 체결 추진***('21.上) 및 **채용 컨설팅 지속 지원**('21.下, 250개)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일터혁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내 공정 채용 문화 확산

□ **(임금체계)** 공공 **경사노위 공공기관委** 합의* **후속조치** 본격 논의('21.4월)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20.11.18.) 주요내용: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 ▲기관별 특성을 반영, 개별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 추진

○ 민간 **일터혁신 컨설팅**[1]('21년 670건) 확대, **임금정보 제공**[2] 등을 통해 **노사 자율적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

1)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20년 11종) 확대,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실시
2)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규모·산업·직종·직급 등에 따른 임금정보 제공

□ **(고용상 성차별)**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신설, 벌칙·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개선** 방안 마련('21.下)

3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

□ **(플랫폼종사자)**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권 내 포섭 및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과 **구체적 보호과제 추진 병행**

○ **(제도적 기반 마련) 4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통과**('21.上)를 위한 **입법여건 조성**(노사·전문가 협의 등 추진, '21.1/4)

* ▲**플랫폼종사자법**(제정): 플랫폼운영자 책무와 지원 등 ▲**직업안정법**: 플랫폼 신고의무 부과 ▲**근로복지기본법**: 공제회 설립 지원근거 마련 ▲**고용정책기본법**: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권익보호)**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확대 등 **금년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 경사노委 내 「플랫폼 산업 위원회」(업종별 위원회) 설치·운영('21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 건강**(산안법 등), **안전망**(고보법 등) 등 관련 **제도적 보호** 강화[1] 및 **표준계약서** 확산[2] 등 **공정 노무제공 질서** 확립

1)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2) 16개 직종(기제정) 외 지속 개발 + 실태점검,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현장안착

○ **택배종사자** 과로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안전 보건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지속 논의 추진

*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택배노사, 소비자단체, 정부 등, '20.12.7. 출범)

□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1.上)

4 자율 · 책임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관계

□ **(핵심협약 비준)** 개정된 **ILO 노동 3법**('21.7월 시행~) **후속조치***, 홍보·교육 등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도 **차질없이 완료**(~'21.2월)

* ▲근로시간면제심의委 경사노위 이관(~'21.6월) ▲교섭대표노조 결정 방식 ▲교섭단위 분리 등

□ **(원 · 하청 상생협력) 산업 · 지역단위 원·하청 공동복지기금**('17년 17개 → '20년 182개) **설립지원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 ▲업종: 조선업 → IT 업종 등 타 사업으로 확산 ▲지역: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

□ **(사회적 대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동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중앙**(경사노委 중심) **· 업종 ·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및 **상생협약* 확산**

* 전주(4.21. 해고없는 도시), 경남(8.18, 양노총 참여 노사정 상생협력 선언) 등 71개 지역

○ 중앙단위에서 경사노위 내 논의를 **적극 지원**, 주요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 추진**

* 고령사회 고용개선委, 사회안전망개선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委, 양극화해소委 등

○ 현장 단위에서 **취약업종 사업장**의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 갈등요소를 발굴, **선제적·단계적 지원**(①예측·대비→②적시지원→③사후관리) 강화

□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 소규모 사업주 교육을 확대**하고, 특고 ·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신설**

* 한국노동교육원에 노동인권교육의 허브기능 부여,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및 강사 양성

과제 5.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감독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역량 결집

☞ '21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 목표

1 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

□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 **사업장 단위 → 全社的**(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 內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도

○ **(기업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1] 시행('22.1월~)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소규모 기업**의 **재해예방의무**[2] **이행 지원** 등 중대재해 예방 노력

1)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구분 ▲CEO 등 안건보건조치 의무 ▲의무위반+사망재해 시 (개인) 1년이상 징역, 10억원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등
(단계적 적용) (50인 이상) '22.1월~, (5~49인) '24.1월~, (5인 미만) 적용제외

2)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등

-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 노무제공자 보호 확대, 경영책임자 관심 및 책임 제고방안 등 검토

○ **(자율적 혁신 유도)** 신설된 일정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의무**('21.1월~) 확행 지도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점검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의 기본적 안전보건조치로 이행되도록 사업장 감독·기술지도 시 확인

2 현장·위험요인 중심 예방 감독 강화

□ **(건설업 집중)**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20년 7,000 → '21년 1만개소)하고 **선별·밀착관리** 추진

*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20.11월 기준): **건설업(52.4%)**, 제조업(22.1%) 등

↳ 건설업 중 **20억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60.9%**를 **차지**

○ **중소규모 건설사** 경우 **건설현장 감독 시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21.~)

□ **(타켓 감독)** **지역·업종, 위험요인, 시기** 등에 따른 **중점 감독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대상사업장**을 추출하여 **집중감독**

○ **고위험 불량 사업장**은 **선별**하여 집중 관리방안 마련

□ **(현장 중심)** 금년 대폭 증차[1]된 **패트롤카**를 통해 **넓은 범위 현장순찰 → 감독 연계** 및 경각심을 통한 **위험요인 자발적 개선 유도**[2]

1) **('19년) 27대/건설 3만** → ('20년) 108대/건설 4만, 제조 2만 → **('21년) 404대/건설 5만, 제조 2만**

2) 패트롤카 탑승시 감독 수용성 증가, 목격만으로도 개인보호구 착용 경향

□ **(적시파악 시스템)** 사망사고 발생 현황 **심층분석**[1], 전국 건설현장 **위험작업 시기·위험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전산시스템(K2B)**[2] 보완

1) 업종별 환경(건설업 기성액 등), 작업공정별(건축.토목 등), 기인물별 등 구분·심층분석

2) 건설 인허가 정보시스템(세움터) 연계하여 전국 건설현장 공사진행 현황 실시간 파악

→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시 **패트롤 감독 대상·시기** 선정

3 산재예방 투자 집중 지원

□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전년비 **2.3배, +5,573억원**)하고,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위험요인 예방** 및 **고위험시설 교체**에 **집중**

* ('20년) 4,197억원 → ('21년) 9,770억

○ **(위험요인별 예방) 건설현장 추락방지 시설***(6.9천개소) 및 **화재·폭발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2.2천개소) 등 지원 확대

* (현행) 일체형 작업발판 → (확대) 승강기용 시스템비계, 태양광 시공사 안전덮개 추가 등 검토

○ **(고위험시설 교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위험기계 교체, 노후 공정 개선** 등 지원 신설(**'21년 신규 3,271억원**)

* **(미인증 3대 위험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교체(4,911대)
(뿌리산업 위험공정) 주조업, 소성가공업, 표면처리업 공정 개선(921개소)

○ **(소규모 사업장 최우선 지원)** 산재예방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 지원**

4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건설현장 **산재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 등을 강화 → 실질적 **산재예방 관리범위 확대**

○ **(지자체)** 관내 건설현장 대상 **지도 및 교육·홍보** 등 산재예방활동 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산안법 개정) 및 **상시 합동점검** 강화

* (산안법 개정내용) ▲ 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 지자체 역할 ▲ 국가 지원 근거 등

○ **(민간기관) 건설현장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산재예방기관 **계약제도 개선** 및 **평가체계 개편** 추진

○ **(협업체계) 안전보건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 간 **산재예방활동**을 **연계·강화**하고, **합동 점검·감독** 등 **지역별 현장 밀착관리 추진**

* 노동부 본부(지방관서) – 안전공단 본부(지사) – 광역(기초)지자체 – 민간산재예방기관 등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78만명의 일자리를 지킵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됩니다.**

- **104.2만개의 공공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여성** 등의 **직업훈련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으로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20) 1,426만명 → **('21) 1,500만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59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전국민 평생취업지원을 지원합니다.

☑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 확대(1.7만명), 신기술 훈련비용(50만원) 추가 지원(K-Digital Credit, 4만명 등)

☑ **산업구조 변화에도 생애 직무역량 개발과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일터의 생산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4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가 조성됩니다.

☑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임금격차가 완화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필수노동자 등의 기본권익이 보호**됩니다.

☑ **자율·책임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5 중대재해 감축으로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 **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상 감축**합니다.

☑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21.7월부터 가입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자**: ('20) 16.6만명 → **('21) 70만명(목표)**

붙임 1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우리 회사의 버팀목, "고용유지지원금"】

A씨는 국내 여행사에서 국내외 여행지를 발굴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일을 했다.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사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경영진이 감원을 고민한다는 소문에 직원들 모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이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하였고, **노사는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기로 합의**했다. 회사가 휴업에 들어갔지만 A씨는 월 200만원의 휴업수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재무팀 담당자는 그 휴업수당 중에 90%는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하였다. **A씨는 고용보험이라는 버팀목이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든든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을 잃은 후 구직활동이 길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38세의 구직자 이씨는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취업을 위한 체계적 단계를 밟았다.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키우지 못했던 이씨에게, **한 달에 50만원 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활동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전기분야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인 국가기간산업·직종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직무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비전공 청년에게도 디지털 일자리의 길을 열다! 청년특화훈련("K-Digital Training")】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청년 A씨**는 취업난 때문에 **IT 분야로 진로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기초지식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K-Digital Training 사업에 참여**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유수의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씨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기업이 **직접 설계한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현장에 기반한 훈련과정**을 통해 **디지털 현장 실무인재로 성장하는 중**이다.

붙임 2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21년 예산	주요 내용
1.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13,728	**78만명**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60	**9만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645	**8개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018	**38만명** (신규 9만명, 지속 2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4,676	**5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4,017	**35만명** (신규 10만명, 지속 25만명)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9	**450개社**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85	**90개소**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1	**6.3천명**
2.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8,286	**40만명** (청년 1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3,272	**19만명** (청년 13만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8,103	**127.5만명** (임금근로자 81만명, 예술인 3.5만명, 특고 43만명)
구직급여	113,486	**164만명** (예술인 3.7천명 포함)
산재보험급여	65,236	**36만명** (특고 적용 확대 2.9천명)
3.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K-Digital Training	1,390	**1.7만명**
K-Digital Credit	200	**4만명**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52	**27.6만명**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13	**1,400개소**
유연근무지원	236	**1.1만명**
4.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직종별 건강진단, 근골질환예방지원 등	116	**건강진단 5.9만명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	18	상담센터 **10개소**
5.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산업안전 패트롤카 운영	49	**404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561	**기술지도·컨설팅 41만회 등**
안전투자 혁신사업	3,271	위험기계·기구 교체 **4,911대** 위험공정·장비 개선 **921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3,228	**1,830개소**